

울산지방법원 2024. 5. 14 선고 2024가단105491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5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1. 목록 기재 부동산의 5층 373.75㎡ 및 6층 292.16㎡를 인도하고,
나. 2023. 8. 11.부터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,0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2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: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조상민

별지